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92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서왕진 · 정춘생 · 신장식
박은정 · 이해민 · 백선희
김종민 · 김재원 · 강경숙
차규근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실직과 해고, 임금 손실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
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170조제1호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2. 이상기후(「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이하 제52조의2에서 같다)로 인한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52조의2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중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작업중지에 따라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을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를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을 “해고나 불리한 처우 및 부당한 근로 요구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중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는 아니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및 고지의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별·직종별로 구분하여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별·직종별 지침을 관리감독자에게 교육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별·직종별 지침의 수립 절차·내용

과 교육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및 부당한 근로 요구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 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 52조 및 제52조의2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u> <u>2. 이상기후(「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 기후를 말한다. 이하 제52조의2에서 같다)로 인한 자연재 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5</u>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조의2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중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작업중지에 따라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 해고나 불리한 처우 및 부당한 근로 요구를 ---

다.

<신 설>

<신 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

⑤ 사업주는 작업중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
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
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
해서는 아니된다.

제52조의2(자연재난 대비 작업중
지 지침 수립 및 고지의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시 근로자
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
하여 산업별·직종별로 구분하여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구
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
업별·직종별 지침을 관리감독
자에게 교육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
업별·직종별 지침의 수립 절
차·내용과 교육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170조(벌칙) -----
